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178호

「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1-65호)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」 행정예고

1. 개정사유

'23.2.1.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 업무 등을 이관함에 따라 근거규정을 정비하고,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 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 시 대상이 되는 피투자 기업의 범위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규정 정비(안 제24조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1일

4. 의견제출

「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」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3 27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 : 투자관리감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| 개정(안) | 수정(안) | 수정 사유 |
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ssun52@korea.kr

2) 주소 : (우 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 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

3) 팩스 : 044-204-772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(전화 : 044-204-772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제1항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”을 “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업”으로, “대표자를 통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,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을 “대표자를 통하여,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4조(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) ① 영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벤처기업등"이라 한다)의 대표자를 통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,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이하 "확인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투자확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| <p>제24조(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) ① ----- ----- -----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벤처기업등"이라 한다)의 대표자를 통하여,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(이하 "확인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투자확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|